

작성부서	생명보험협회 홍보부	손해보험협회 홍보부
책 임 자	부장 김경래 (☎ 2262-6610)	부장 곽수경 (☎ 3702-8651)
담 당 자	팀장 이 훈 (☎ 2262-6636)	팀장 이용노 (☎ 3702-8582)
배 포 일	2024.12.30.(월)	배포 부서 생명보험협회 홍보부 (☎ 2262-6605) 손해보험협회 홍보부 (☎ 3702-8655)

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

주요 내용

1.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보험소비자 보호

- 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
- ② 해피콜(완전판매 모니터링) 소비자 편의성 개선
- ③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
- ④ 단체보험, 업무 외 재해 사망시 보험수익자 변경

2. 사회재난, 취약계층 등 관련 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


- ①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
- ②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

3.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 제고

- ① 보험사기 알선·권유·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

1

소비자 권익 제고 및 보험소비자 보호

주요 내용	관련 근거	시행 시기
<p>□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</p> <p>○ “실손보험 청구 전산화”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*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·웹(홈페이지)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,</p> <p>*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,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, 처방전 등</p> <p>- 1단계로 병원급(병상 30개 이상 등) 의료기관에서 '24.10.25부터 시행된 데 이어, 2단계로 '25.10.25부터는 의원,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</p> <p>※ '실손24' 앱 설치 QR 코드</p> 	<p>보험업법 제102조의6</p>	<p>'25.10.25.</p>
<p>□ 해피콜(완전판매 모니터링*) 소비자 편의성 개선</p> <p>*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·보완하는 설명 절차</p> <p>○ 고령자(65세 이상) 가족 조력제도 도입</p> <p>- (기 존) 고령자는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의 해피콜 불가 → (개 선) 가족을 조력자*로 지정 시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 가능</p> <p>*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인 성인</p> <p>○ 주요 외국어 통·번역 서비스 도입</p> <p>- 외국인에 대하여 해피콜을 진행할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외국어*에 대해 통역 또는 번역 서비스 제공</p> <p>* 외국인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회사별로 주요 외국어 선정</p>	<p>보험회사 해피콜 가이드라인</p>	<p>~'25.3월 까지 각 사별 순차적 시행</p>

주요 내용	관련 근거	시행 시기						
<p>□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</p> <p>○ 보험금 대리청구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, - 앞으로는 전자적 인증 방식*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</p> <p>*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모바일 인증 등 안전성이 확보된 수단</p>	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	'25년 4월						
<p>□ 단체보험, 업무 외 재해 사망 시 보험수익자 변경</p> <p>○ 단체보험계약*에서 '업무 외 사망' 시의 보험수익자를 '회사' 에서 '근로자(법정상속인)' 으로 변경하여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 강화</p> <p>*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'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'로 지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은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취지 반영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주요 개선 내용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현 행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개 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단체보험 업무외사망 보험수익자</td> <td>보험계약자* 또는 법정상속인 *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(단체)</td> <td>법정상속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현 행	개 선	단체보험 업무외사망 보험수익자	보험계약자* 또는 법정상속인 *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(단체)	법정상속인	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 14 표준 사업방법서	'25.1.1
구 분	현 행	개 선						
단체보험 업무외사망 보험수익자	보험계약자* 또는 법정상속인 *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(단체)	법정상속인						

2 사회재난, 취약계층 등 관련 의무보험 보상한도 상향

주요 내용	관련 근거	시행 시기									
<p>□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</p> <p>○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,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·신체·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 보험으로, - 가스사고*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</p> <p>* 고압가스, 액화석유가스, 도시가스, 수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현 행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개 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망, 후유장해</td> <td>최대 8,000만원</td> <td>최대 1.5억원</td> </tr> <tr> <td>상 해</td> <td>최대 1,500만원</td> <td>최대 3,0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현 행	개 선	사망, 후유장해	최대 8,000만원	최대 1.5억원	상 해	최대 1,500만원	최대 3,000만원	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	'25.5.15
구 분	현 행	개 선									
사망, 후유장해	최대 8,000만원	최대 1.5억원									
상 해	최대 1,500만원	최대 3,000만원									

<p>□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,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·신체·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집,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현 행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개 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망, 후유장해</td> <td>최대 8,000만원</td> <td>최대 1억원</td> </tr> <tr> <td>상 해</td> <td>최대 1,500만원</td> <td>최대 2,000만원</td> </tr> <tr> <td>대 물</td> <td>200만원</td> <td>25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울러, 동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*의 범위도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아래 각 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 - (기 존) 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 → (추 가) 과학관, 수목원 및 정원, 공공하수처리시설, 유원지 등 4종 시설 추가 	구 분	현 행	개 선	사망, 후유장해	최대 8,000만원	최대 1억원	상 해	최대 1,500만원	최대 2,000만원	대 물	200만원	250만원	<p>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</p>	<p>'25.6.18</p>
구 분	현 행	개 선												
사망, 후유장해	최대 8,000만원	최대 1억원												
상 해	최대 1,500만원	최대 2,000만원												
대 물	200만원	250만원												

3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통한 보험사기 적발 제고

주요 내용	관련 근거	시행 시기
<p>□ 보험사기 알선·권유·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보험사기방지특별법」 개정·시행(24.8)으로 보험사기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·유인·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됨에 따라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험사기 알선·권유 등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(100만원) 지급 근거* 마련을 통해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유도 및 보험사기 근절 제고 * 「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」 개정(24.12)·시행(25.1.1) ※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보험사기 알선·권유·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를 '24.8.14부터 기 시행 중 	<p>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제5조의2,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</p>	<p>'25.1.1</p>